

2002年度 地方財政
投・融資事業審査指針



京畿道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전문개정 2001.4.6 행정자치부령 제130호 행정자치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심사기준)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 (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 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의 사업비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사업

III. 今年부터 달라지는 事項

1. 지방재정패널티제 본격 시행

- 금년부터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투·융자사업 예산을 편성·지출한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범위 이내에서 다음연도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감액
- ※ 근거 : 교부세법제11조제1항, 동시행령제12조제1항

2. 기존 투자사업의 추진실태를 종합 분석하여 D/B화

- 투자심사의뢰일 현재 자치단체가 추진중이거나 당해연도종에 착공할 2천만원이상 투자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
 -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규모, 재원조달상황, 공정율(%), 심사 당시계획 대비 변경된 내용 등
- 기존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신규 심사대상사업 타당성 검토
 - 재원조달 가능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중복성, 시급성, 필요성 등
- ※ 금년중 「기존사업 추진상황」 을 D/B화 하여 전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임

3. 민자사업 투자자의 능력 판단

- 투자재원중 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 민간투자자의 투자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 민자규모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민자유치 학약서」 또는 「민자 유치계획서」를 제출받아 민자투자를 가능성 판단
 - 민자규모가 50억원이상인 경우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투자 예정자의 부채비율, 자본금, 투자실적, 현금보유 잔고 등을 심사하여 투자 가능성을 판단

4. 투자심사 제외 대상사업 확대

□ 조건부제외사업 신설

-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여 매년 재원을 투자하여 시행해야 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등은
 - 지방재정법제22조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부처에서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 협의 등을 거친 경우 심사제외사업으로 인정

〈대상사업〉

- ①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②축산·분뇨, 오폐수처리시설,
- ③광역 도로전철, 주차장사업, ④쓰레기·폐기물 매립·소각장,
- ⑤화장장 등 납골당시설, ⑥농어촌 및 지방상수도사업

□ 기타 당연 제외사업 추가

- ①문화재 개보수사업 ②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설립사업

5. 투자심사위원의 전문성 확대

- 지방의회 의원 및 투자사업과 관련없는 공무원은 심사위원에서 배제
- 분야별 전문가를 고르게 구성
 - 도로, 교통, 문화·체육, 청소년, 청소·환경·상하수, 주택, 지역개발 등

6. 투자심사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

- 투자심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6일이전) 사후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평가위원 구성
- 평가결과를 토대로 『재정페널티』 적용 및 우수단체 시상

7. 심사방법의 합리적 개선

- 대상사업 분야별로 표준기준을 정하고, 객관적인 data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 상정
예시) 도로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1일 교통량, 인접도로의 개설계획 등

8. 2단계 심사제도 도입

- 사업규모변동율이 크고 사업시행의 연관효과가 큰 사업은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실시도록 함

< 대상사업 : 5개사업 >

- 총 사업비 1,000억원이상 신규사업으로서
- ① 체육시설 ② 공공용청사 ③ 지방산업단지 조성
- ④ 택지개발사업 ⑤ 관광단지 조성 및 개발사업

· 1단계심사 : 기본계획 수립이후 실시설계 이전

· 2단계심사 : 실시설계 완료이후 계약체결 이전

※ 1단계심사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2단계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만 2단계 심사

9. 투·융자 심사기법 개발

- 투자심사의 객관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객관적인 심사기법(메뉴얼)을 개발하여 전자치단체에 보급

< 메뉴얼 예시 >

- | | |
|--------------|-----------------|
| ①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②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
| ③ 주민요구도 | ④ 사업규모 및 비용 적정성 |
| ⑤ 재원배분의 적정성 | ⑥ 경제적 수익성 |
| ⑦ 사업추진상 제약요인 | ⑧ 재원조달 가능성 |

關 係 法 令

□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융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4.12.22>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신설 1991.12.31, 1994.12.22>

⑤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9.1.21>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5.16, 1998.7.16>

1. 시·도 :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1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건축비(소요사업비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1995.5.16, 2001.9.15>

④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1995.5.16, 1998.7.16>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한 투·
융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와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9.15>

⑥투자심사의 기준 기타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5.16, 1998.7.16>

제30조의2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뢰하는 투자심사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
속하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3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
위원회를 둔다.

②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1.9.15>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사업

라.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심사의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10월 15일까지,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3월 2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 (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시·군·구 자체검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시·도의회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3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다. 중앙의회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7조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65조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있어서는 1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11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지방양여금 및 시·도비를 지원하거나 지방채발행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투자심사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30호, 200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